

범죄피해자 관련 보도 유감



글 이은경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서울제5중재부 중재위원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있었고, 국민들의 공분이 들끓는 가운데 이에 관한 근본적 성찰과 제도적 보완책이 논의되었다. 언론이 사회의 방향성을 주도한 사례 중 하나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한 가지 유감이 있다. 바로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기치로 내걸면서도 피해자 인격배려가 소홀하다는 점이다.

새엄마에게 맞아 죽은 여덟 살 아이에 대한 친엄마의 처절한 심정은 도외시한 채 이혼경위나 아이의 유류품 인수 등에 대한 끈질긴 취재 요청이 있었고, 심지어 사망한 아이의 언니를 취재하기 위해 학교 화장실 안까지 불러들여 인터뷰를 시도하는 등 아주 과도한 취재경쟁이 있었다. 아이의 언니는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고 증언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새엄마의 강요로 거짓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동생의 죽음과 가정의 파탄, 진실을 밝혀 범행을 드러내게 한 결단까지, 어린아이가 숨쉬기도 버거웠을 거다. 그런데 인간이 감당키엔 너무도 버거

운 고통이 굵은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을 아이에게, 위로나 격려는커녕, 세간의 호기심을 만족케 하려는 취재경쟁을 하였으니 언니나 엄마에겐 아주 쓰라린 고통을 안겨주었을 거다.

나 또한, 예전에 이라크에서 사망한 김선일 사건의 유족들을 대리하면서 언론의 돌변으로 맘이 굉장히 아팠었다. 김선일은 엄청나게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였다. 그런데 언론이 초창기의 동정적 태도를 급변하여 피해자 유족이 터무니없는 배상을 요구한다느니, 가족사가 문제가 많다느니 갖은 공격을 일삼는 바람에 유족들이 죽음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을 목격했다.

사실 범죄피해를 둘러싼 언론의 과잉보도는 예전에도 몇 차례 공론화됐었다. 특히 2년 전, 온 국민을 격앙케 했던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언론의 과잉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고, 지난 3월 법원은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는 언론의 주장을 배척하고, 금전적 손해배상과 관련 기

사 삭제를 명하는 판결 두 건을 선고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가 다시 한 번 수면 위에 떠오른 지금, ‘명예훼손’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한 판례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 “공공성의 본질을 뛰어넘는 사생활 탐색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가 범죄 형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

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며,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생각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

적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치명적

인 이차적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성폭행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1998. 7. 14. 선고 96다17257판결 등 참조)를 적용했다.

2년 전, 7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곤히 자고 있다가 이불째로 납치당한 후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의 보도경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범죄 보도를 넘어 도에 지나친 과열이 시작됐다. 언론을 통해 아이 집 내부 사진이 공개되고, 어떤



2012년 9월 1일,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피의자를 취재하기 위해 몰린 취재진 (출처 : 시사IN, 「그날, 언론이 흥기가 되었다」, 2014년 4월 21일자)

언론사는 범인의 이동 경로를 탐색한다고 항공 사진까지 동원한 상세지도를 내기도 했다.

그러더니 곧장 부모의 책임을 묻는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몇몇 언론은 아이의 부모

들이 가해자와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범인이 집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보도하고, 사건 당일 게임광이었던 아이 엄마가 전날 밤새 게임을 하다가 집 출입문도 잠그지 않은 채 잠이 들었고, 아이 아빠도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잠들었기 때문에 범인이 그런 대담한 수법으로 아이를 납치해 올 수 있었다는 보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보도가 연일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비난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부모에게로 확산됐다. 개개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된 가족들은 엄청난 슬픔으로 가슴을 치면서도 도망치듯 이사를 가야 했고, 주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오랜 기간 감내해야 했다. 결국, 참다못한 피해자 가족들은 언론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모 신문사에 대한 첫 번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3가합50317판결)는 문제의 보도내용 중 ‘명예훼손’ 여부를 다룬 부분이 피해자 아빠에 대해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술을 매우 많이 마시는 사람이다”, “월수입은 15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기사였고, 피해자 엄마에 대해서는 “게임광이다”, “당시 PC방에 있었다”,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가해자에게 가정환경을 상세히 알려주었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대장 파열, 질 열상, 얼굴에 붉은 치흔과 멍”이 있었다는 기사였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를 다룬 부분은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

을 보도하고, 피해자 아빠의 월수입을 공개한 점, 집 내부구조 그림을 공개한 점, 피해자의 그림일기장을 촬영하여 기사화하고, 그림일기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점, 피해자의 나이를 공개한 점, 집 외부 촬영사진을 게재한 점, 당초에 범행대상은 피해자의 언니였다는 점 등이다.

한편, 모 방송사에 대한 두 번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3가합50737판결)는 문제의 방영내용 중 ‘명예훼손’ 여부를 다룬 부분이 “피해자 엄마와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당초에 범행대상은 피해자의 언니였다”는 내용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를 다룬 부분은 집 내부 촬영 영상과 집 외관 조망 영상을 내보낸 점, 피해자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내보낸 점 등이다.

먼저,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 요지는 여러 쟁점 중 피해자 아빠가 “당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월수입은 15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대장 파열, 질 열상, 얼굴에 붉은 치흔과 멍이 있었다”, “당초에 범행대상은 피해자의 언니였다”는 내용은 그 자체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피해자 엄마가 “게임광이다”, “당시 PC방에 있었다”,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가해자에게 가정환경을 상세히 알려주었다”고 보도한 부분과 피해자 아빠가 “술을 매우 많이 마시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은 부모의 잘못으로 피

해자를 보호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니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해도 “당시 PC방에 있었다”,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가해자에게 가정환경을 상세히 알려주었다”는 부분은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적시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의 것이니 공공의 이익으로 인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대한 판결 요지는 피해자의 나이 및 집 내부구조 그림을 공개한 부분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 되는 대상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피해자의 그림일기를 보도한 점, 집 내부 촬영 사진 및 피해자 아빠의 월수입을 보도

한 점, 그리고 주거를 침입하여 집 내부 촬영 영상 및 집 외관 조망 영상을 내보낸 점, 피해자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내보낸 점 등은 이러한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특히 집 내부나 그림일기의 내용은 사생활 중 매우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동의 없이 사회 일반에 노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과연 피해자의 고통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지 알 순 없다. 그래도 특히 범죄피해를 다루는 언론에 대해 보도의 한계를 그어준 사례라는 점에서 다소간의 경각심은 일으켰으리라 생각한다. 차제에 언론이 특히 범죄피해 보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피해자의 심정을 가지기를 바란다.